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거리기본법안

검 토 보 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3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4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4
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6
다. 관계기관 의견	8
3. 법 제정 필요성	10
4. 주요 항목별 검토	13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	13
나. 정의 등	17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무	22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마.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등	29
바. 국가먹거리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등	33
사. 국가먹거리위원회, 사무국, 먹거리정책책임관, 국가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42
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 통보	52
자. 시·도먹거리위원회 및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57
차.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국내외 협력	62
카. 보칙	6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둔(안 제2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

IV. 검토의견

1.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먹거리기본법안」 3건 중 2건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고, 1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나, 3건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제21대 국회 심사 경과]

연번	법률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일
1	먹거리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23.4.10	'23.6.27	
2	먹거리기본법안	강은미의원	'23.4.25	'23.6.27	
3	먹거리기본법안	이원택의원	'23.8.11	-	'23.09.14. ※ 소위 직회부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제정안은 총 6장, 33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먹거리의 가치)
제2장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제8조(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 제9조(먹거리 보장의 수준) 제10조(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제11조(먹거리 보장권의 양도금지 등)
제3장 먹거리 종합전략 등
제12조(국가먹거리종합전략의 수립)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제15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6조(종합전략 추진상황의 점검) 제17조(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및 평가)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9조(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먹거리 종합전략의 총괄·조정
제20조(국가먹거리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제23조(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4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제26조(시·도 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7조(상설 숙의기구 설치·운영)
제5장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국내외 협력
제28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제29조(실태조사·교육·홍보 등) 제30조(국내외 협력 등)
제6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감독과 보고) 제33조(포상)
부칙(공포 후 1년 후 시행)

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본이념, 정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11조).

둘째, 국무총리는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종합전략에 따라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평가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제17조).

셋째, 먹거리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도는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제26조).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9조~제30조).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기본이념, 정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안 제1조~제11조)	○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함. ○ 먹거리 관련 기본이념 및 정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등 규정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국가 먹거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안 제12조~제17조)	○ 국무총리는 10년마다 국가 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평가 보고서를 작성·공표
국가먹거리위원회, 시·도먹거리위원회,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도먹거리지원센터 (안 제20조~제26조)	○ 먹거리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 먹거리위원회를 설치 ○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는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도는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실태조사·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안 제29조~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실시,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지원
부칙	○ 공포 후 1년 후 시행

다. 관계기관 의견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 또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필요성 등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정책 중복성 등을 감안할 때 별도 법 제정보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보건복지부

제정안과 「국민영양관리법」의 규율 대상이 중복되며, 법률 목적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복됨. 이에 업무추진 과정의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고,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구체적인 조문별 관계기관 의견은 후술하는 ‘제정안 내용별 검토’ 부분에서 검토

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식품 안전, 식생활 관리에 관한 법적 체계 및 정책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 조직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법률 간의 충돌 우려가 있음.

4) 행정안전부

제정안의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국가먹거리 위원회 사무국’ 및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관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기획재정부

제정안 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등 기존 법률과 유사·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의무적 재정지원 및 기구·조직 신설 강행 규정은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입장임.

3. 법 제정 필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²⁾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국민들의 영양 섭취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영양 섭취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수준	하	11.9	14.7	16.0	18.7	16.7	21.8	20.9	20.7	19.9
	중하	9.0	10.0	12.2	13.3	12.5	17.8	15.6	20.4	17.7
	중	6.0	6.4	13.0	12.3	14.0	18.1	15.5	14.9	17.4
	중상	8.7	7.8	10.0	13.3	11.3	14.0	19.2	11.8	15.5
	상	6.3	5.6	11.0	9.6	10.7	12.1	15.7	14.3	12.0

※ 자료 : 질병관리청, 「2022 국민건강통계」, 2023. 12.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 기후,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식량보호주의³⁾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과 세계식량가

2) 한국농정 기사, “기후·먹거리 위기로부터 ‘먹거리기본권’ 지키자 - 전국먹거리연대, 지역먹거리사업 재진단, 22대 국회 먹거리정책 요구안 정돈 필요”, 2024. 6. 6.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109>)

3) 한 나라가 자국의 식량 공급을 보호하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내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격지수⁴⁾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

(단위: 2014년~2016년 평균 = 100)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6년도	91.9	91.0	82.6	88.3	99.4	111.6
2017년도	98.0	97.7	108.0	91.0	101.9	99.1
2018년도	95.9	94.9	107.3	100.8	87.8	77.4
2019년도	95.1	100.0	102.8	96.6	83.2	78.6
2020년도	98.1	95.5	101.8	103.1	99.4	79.5
2021년도	125.8	107.9	119.6	131.2	164.9	109.3
2022년도	144.7	118.8	149.5	154.7	187.8	114.5
2023년도	124.7	114.8	123.7	130.9	126.3	145.0
2024년도	120.1	116.4	126.3	113.8	130.9	125.9

※ 자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홈페이지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먹거리 관련 정책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어 먹거리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식품산업진흥), 해양수산부(수산물), 보건복지부(식생활, 영양), 식품의약

4) 세계식량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는 국제 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주요 식량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로,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등 5가지 주요 식량 품목군의 국제 거래 가격을 종합하여 산출.

품안전처(식품안전), 교육부(학교 급식 및 식품위생), 환경부(먹는물,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통상자원부(유전자변형생물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소비) 등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⁵⁾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⁶⁾.

이에 제정안은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2023년말 기준으로 전국 173개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4. 주요 항목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제정안 제2조는 국민이 먹거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먹거리 자급능력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 등 먹거리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의 자급능력 향상
2. 모든 국민에게 상시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 접근

제정안
권 보장 3. 생태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 4. 먹거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과 독점거래의 방지 5. 지역에 기반을 둔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 6. 국민 모두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과 강화 7.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 8.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공성 확립 9. 국민건강을 위한 균형 있는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생활 관리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의 기본이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⁷⁾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7)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현 행	정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 략) <u><신 설></u>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 략) 4.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안 제2조제2항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식품안전기본법」⁸⁾과 「식품위생법」⁹⁾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중복 소지가 있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이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다수의 법률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8)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률 간 목적 및 기본이념 비교]

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목적)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명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적)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 공급	(목적)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영양 질적 향상,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증진

나. 정의 등

제정안 제3조는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 ‘식량주권’, ‘먹거리 접근권’, ‘공적 먹거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천조직’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7조는 ‘먹거리’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긴급 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공공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및 소비의 문제를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식량주권”이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소비에 관한 결정을 농어민과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먹거리 접근권”이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공적 먹거리”란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급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과 신생아, 영유아, 소아, 노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기타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등을 말한다. 8.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천조직”이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문화·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제정안

제7조(먹거리의 가치) 먹거리는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이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의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의 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¹⁰⁾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정안의 ‘먹거리’는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을 그 범주로 하여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식품¹¹⁾’으로 기본권 보장 범위를 한정하여 정책 추진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현 행	정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생 략) <u><신 설></u>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현행과 같음) <u>12. “식품 기본권”이란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긴급 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u>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안의 ‘먹거리’ 정의가 「식품안전기본법」¹²⁾과 「식품위생법」¹³⁾ 상 ‘식품’의 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먹거리’를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는 온갖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상 식품의 정의와 동일함.

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식품의 정의를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법률별 식품 및 먹거리 정의 비교]

구 분	식 품	먹 거 리
제정안	-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는 온갖 것
표준국어대사전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1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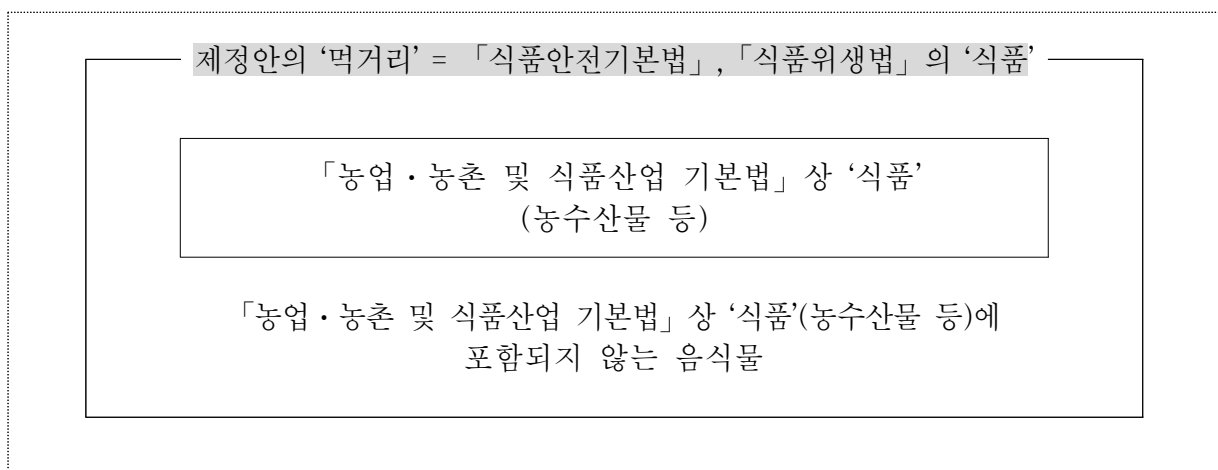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구 분	식 품	먹 거 리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제7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 제외)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3.

즉, 제정안의 ‘먹거리’ 혹은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일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식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식품' 및 '먹거리' 범위]



따라서 ‘먹거리’의 정의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먹거리’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조제8호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천조직”이라는 용어는 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3조제1호에서 ‘먹거리’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는 ‘먹거리’를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 등으로 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 정의 관련 규정]

안 제3조제1호	안 제7조(먹거리의 가치)
“ <u>먹거리</u> ”란 의약품을 제외한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을 말한다.	<u>먹거리는</u>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것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며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아니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필수적 요소이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무

제정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② 정책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 반영 노력 의무, ③ 관련 조직 및 기구 설치·운영 의무, ④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마련 의무, ⑤ 관계 법령 제정 및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권리와 타인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과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공적 먹거리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의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정안

⑦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든지 먹거리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행정안전부

제정안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 하에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동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② 기획재정부

제정안 제4조의 의무적 재정지원 및 기구·조직 신설 강행 규정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4조제3항·제4항·제7항의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 개별 법률¹⁴⁾에서 국민이 식품정책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식품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신고 등 관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14)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6항)함과 동시에,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7항)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 제5조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정안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국가먹거리종합전략,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제정안 제4조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계획 간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12조는 국무총리(국가)로 하여금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을, 제정안 제13조는 국무총리(국가)로 하여금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제정안 제14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과 시·도

지사(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 혹은 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정안 제4조제1항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안 제4조제1항	안 제12조~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과	▪ 국무총리에게 10년 단위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의무 부과(안 제12조) ▪ 국무총리에게 종합전략에 따른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안 제1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또한, 제정안 제4조는 제정안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각 항의 구체적인 내용(계획, 조직,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후술하는 각 주제별 검토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 제6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다른 법률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이 법의 추진 기본원칙,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이 법의 추진 기본원칙,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관련 개별 법률은 각 법률의 고유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식품 관련 개별 법률이 먹거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명

시하는 것은 각 조직의 업무 영역 및 추진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제정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해양수산부

제정안 제6조제2항의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타 법에 의해 형성된 법적 안정성의 저해 및 관계 기관의 기능·역할 침해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6조제2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이 다른 법률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 및 공익적 가치가 높은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완화시켜, 먹거리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다른 국가기관이 타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간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가 필요해 보임.

마.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 등

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먹거리 보장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먹거리 보장권의 보장 수준을 정하도록 하며,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보장권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8조(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이하 “먹거리 보장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제9조(먹거리 보장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 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먹거리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적 먹거리 공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공급가액 등 공적 먹거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먹거리 보장권의 양도금지 등) 먹거리 보장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먹거리 공급기준, 공급 수준 등의 보장 수준을 반영함이 바람직함.

② 해양수산부

제정안 제9조제1항은 제정안 제17조 먹거리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 지표 작성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공적 먹거리에는 기타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도 포함되어 공급기준 및 공급 수준 등을 국가·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제정안 제9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제정안 제8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권리(이하 ‘먹거리 보장권’)를 규정함. 제정안 제10조는 식량주권에 기반하여 동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1조는 동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 보장에 관한 권리를 ‘먹거리 보

장권'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제정안이 먹거리 관련 기본법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9조제1항은 먹거리 보장권의 보장 수준으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9조제2항·제3항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먹거리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함.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 가정식비'를 생각해볼 수 있음. 가정식비¹⁵⁾란 가구당 소요되는 식비(1개월)를 의미하며, 이 중 '최저 가정식비'는 최소한의 영양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의 가정식비를 의미함.

[가정식비 개념 차이]

- (건강식사방식 가정식비) 미국 SNAP* 적용 방식으로, 식품군별 권장 섭취패턴 및 현재 섭취 패턴을 고려하여 최적화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합리적)
 - * 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저가격 식품 구성이 아닌 기존 식단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품 구성으로 최저 가정식비보다 식비 산출 기준이 높음
 -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
- (최저 가정식비) 보건사회연구원 '20년 계층 결과 기준으로, 식품군별 권장 섭취패턴과 저소득층의 다소비 식품을 기준으로 장바구니를 구성하여 산출(현실적)
- (사용가능 가정식비) '20년 한국복지패널 중위소득 50% 이하 표본가구의 시장소득 중 가정식비와 생계급여 중 가정식비 산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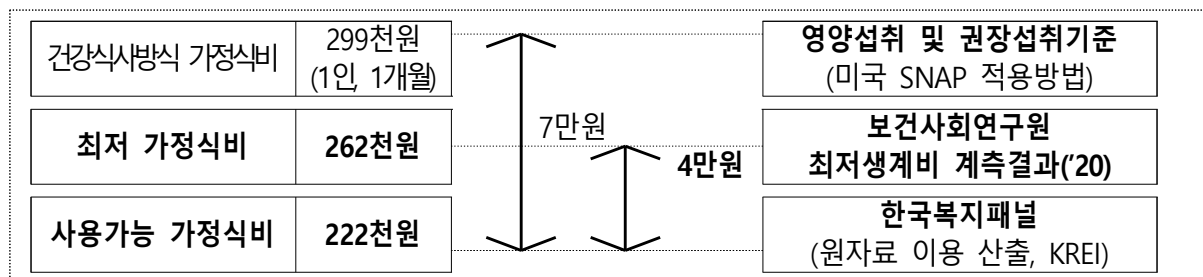
15) 가정식비는 생계급여 수준, 물가, 조사대상의 소비패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금액 변동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최소한의 영양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정식비 수준은 ‘최저 가정식비(월 26만원, 1인가구 기준)’가 될 것임.

이 때 먹거리 취약계층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가능 가정식비’¹⁶⁾ 수준을 각 가정별로 이미 도달했다고 보면, 공적으로 공급되어야하는 먹거리의 수준은 ‘최저 가정식비(월 26만원, 1인가구 기준)’와 ‘사용가능 가정식비(월 22만원, 1인가구 기준)’의 차액인 4만원이 되는 것임.

만약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건강식사방식 가정식비’ 수준으로 정한다면, 공적으로 공급되어야하는 먹거리의 수준은 7만원이 될 것임.

[공적으로 공급되어야하는 먹거리 수준 결정 방식]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3.

이와 같이 먹거리 보장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규정은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먹거리 공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먹거리 보장 수준의 예측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6)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20년 사용가능 가정식비* 기준, '19~'21년 연평균 식품 물가지수 증감률 적용하여 '25년 사용가능 가정식비 추정

* 사용가능 가정식비 = (시장소득×엔젤지수) + (생계급여 수급액×최저가정식비 비중(35.1%))

** 최저가정식비 비중(35.1%) = 최저가정식비('20, 보사연) / '20년 생계급여

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

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6조는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수정, 보완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7조는 종합전략에 포함되는 내용인 먹거리 보장 성과지표 작성 및 보급과, 이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타 행정계획·정책이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2조(국가먹거리종합전략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이하 “종합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전략에는 식량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량자급율 상향 목표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전략과 과제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과제 이행과 조직 및 기구 설치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제정안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조정·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종합전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종합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종합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량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추진목표
3.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4. 국가의 먹거리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국민의 영양상태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7.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대학에 설치된 연구기관 등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종합전략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관련 기관·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전략 추진상황의 점검) ①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¹⁷⁾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보건복지부

제정안의 내용과 「국민영양관리법」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내용이 중복됨. 이에 업무추진 과정의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고,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7)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현 행	정 부 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 계획(적정 <u>생산기반의 확보</u>방안 및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생산기반·국민 식품 기본권 확보</u> <u>보방안</u>-----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18)에 따라 2009년부터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 5년마다 정부합동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제정안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내용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④ 해양수산부

제정안 제16조제1항·제2항19)은 국가먹거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

18)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2.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식품안전법령등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식품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먹거리기본법안」

제16조(종합전략 추진상황의 점검) ①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무총리이므로, 점검결과 송부 및 수정·보완 요청의 대상은 국무총리가 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²⁰⁾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사례]

○ 옥천군(2023) 사례(발췌)

○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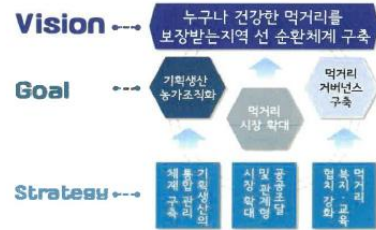
- 옥천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유통-분배」 체계 구축



○ 완주군(2022) 사례(발췌)

III.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추진과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단위의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① 국가먹거리종합전략, ② 국가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③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단위의 일관성있는 먹거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제18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하여금 타 행정계획·정책이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먹거리 관련 계획과 다른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먹거리종합전략,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이 포함하는 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민영양관리법」의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식품안전기본법」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타 기본계획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및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간의 내용적 중복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전략 및 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전략·계획 내용과 타 기본계획 상 관련 내용 비교]

제정안 전략·계획 내용		타 기본계획상 관련 내용
종합 전략	1.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표에 관한 사항	-
	2.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량자급률 상향 목표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전략과 과제에 관한 사항	-
	4.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과제 이행과 조직 및 기구 설치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제정안 전략·계획 내용		타 기본계획상 관련 내용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관련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본 계획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2.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추진목표	-
	3.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과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계획(「국민영양관리법」)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식품안전기본법」)
	4. 국가의 먹거리 기본계획 성과 및 평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관련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
	6. 국민의 영양상태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관련 사업 추진계획(「국민영양관리법」)
	7.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국민영양관리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자료 : 제정안 및 관계 법률을 바탕으로 제작성

사. 국가먹거리위원회, 사무국, 먹거리정책책임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정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3조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5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7조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숙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0조(국가먹거리위원회) 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제정안

1.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성과지표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의 규정 충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업단체 · 축산업단체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식품산업단체 · 시민사회단체 · 학계 ·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제정안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① 대통령은 위원회에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합동 정책회의를 주관하며, 이 법에 의한 감독과 보고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및 기타의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는 직제를 설치한다.

② 사무국 및 해당 직제는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

③ 사무국 및 해당 직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지원 주관
2. 종합전략의 추진 총괄
3.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정책회의 주관
4.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대한 검토 및 평가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의 국회 보고
6.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
7.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사무국 및 해당 직제의 장과 조직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먹거리정책책임관을 보조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정안

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은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확대를 위한 기본 사업
2. 종합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전략 사업
4. 그 밖에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 직제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⑤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의 설립·운영, 수행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권한, 센터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설 숙의기구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설 숙의기구(이하 “상설숙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상설숙의기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숙의적 참여 제도를 운영한다.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숙의를 요청한 사항

③ 상설숙의기구는 제2항과 관련된 숙의 사항에 적합한 숙의적 참여제도를 정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의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기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국가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제정안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기능이 불명확하고, 개별법에서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부), 기부식품등지원센터(복지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식약처) 등 먹거리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② 행정안전부

첫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²¹⁾은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7조제2항²²⁾은 성격·기능이 유사하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먹거리위원회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등을 심의·조정·의결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기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하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²³⁾에 따라 자문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음. 또한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제정안 제22조 및 제23조²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③ 해양수산부

제정안 제21조제2항²⁵⁾의 상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

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22조는 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23조는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임

25) 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22조제3항제2호·제4호²⁶⁾에 따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추진 총괄 및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지막으로, 먹거리 관련 정책은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관계 부처 및 관련 조직과 업무·기능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④ 기획재정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의무 설치 등과 같이 의무적 재정지원 및 기구·조직 신설 강행 규정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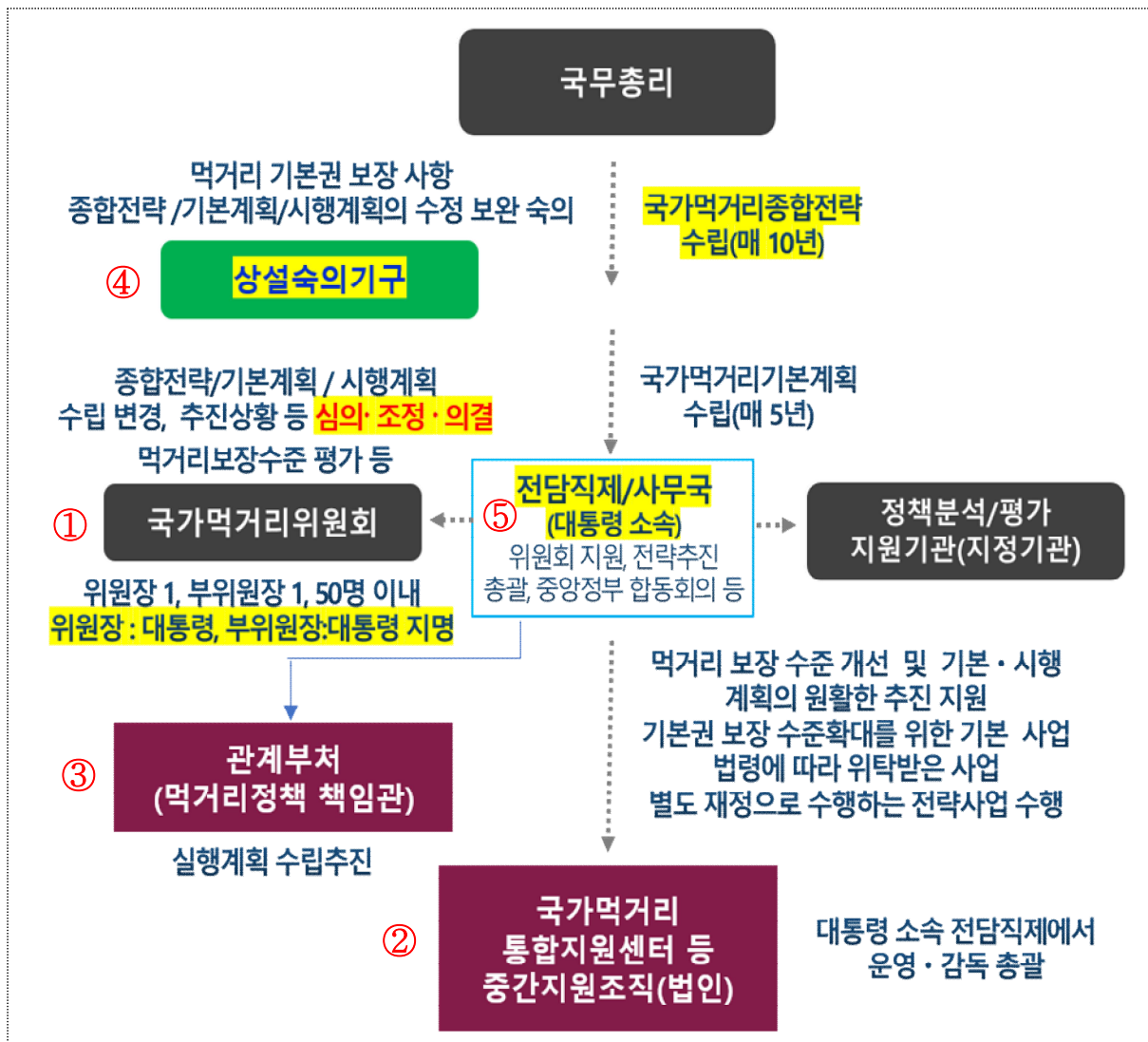
26) 제정안 제22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③ 사무국 및 해당 직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지원 주관
2. 종합전략의 추진 총괄
3.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정책회의 주관
4.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대한 검토 및 평가
5.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의 국회 보고
6.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
7.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에 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① 국가먹거리 위원회, ②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③ 먹거리정책책임관(관계부처, 지자체), ④ 상설속의기구(국가, 지자체), ⑤ 대통령 소속 사무국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에 따른 국가 조직 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현재,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수의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각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원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9년까지²⁷⁾ 운영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위원회는 동법 제2조제5호²⁸⁾에 따라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다른 법률에 의해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터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교육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²⁹⁾, 복지부의 기부식품등지원센

2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존속기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로 규정하고 있음.

2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터³⁰⁾, 식약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³¹⁾ 등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므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기존 센터와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기 운영 중인 다수의 센터와 병렬적으로 운영하면 역할의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수의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동 센터가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한 센터 간 역할 비교]

제정안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 수행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운영 지원	기부식품 조정 및 배분, 교육 실시	어린이 단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29)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 통보

제정안 제19조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② 국가먹거리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먹거리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9조(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먹거리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제·개정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절차를 「행정기본법」 제38조³²⁾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98조³³⁾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³⁴⁾를 통해 국회 등에 통보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 필요성이 낮음.

② 해양수산부

국가먹거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견을

-
- 32)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4)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19조제5항·제6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산물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것은 개별 법률의 입법절차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령 및 행정계획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제·개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함. 또한,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³⁵⁾에 따라 법령 제·개정 입안 시 관계 부처 등에 통보하여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도록 규율하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④ 국세청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³⁶⁾에 따라 예

35)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후략>

36)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후략>

외적인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 그러나 제정안 제19조제4항³⁷⁾은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에 자료의 요구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료제공 요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제정안 제19조는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법령 및 행정계획이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동 규정은 제정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37) 제19조(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통보 등) ④ 제20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유사 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시·도먹거리위원회 및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정안은 각 지역의 먹거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24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먹거리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도 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이하 “시·도먹거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먹거리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원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³⁸⁾에 ‘지역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행정안전부

제정안 제24조제1항³⁹⁾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여건, 설치 필요성,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설치한 경우에도 개최 건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유사 기능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8)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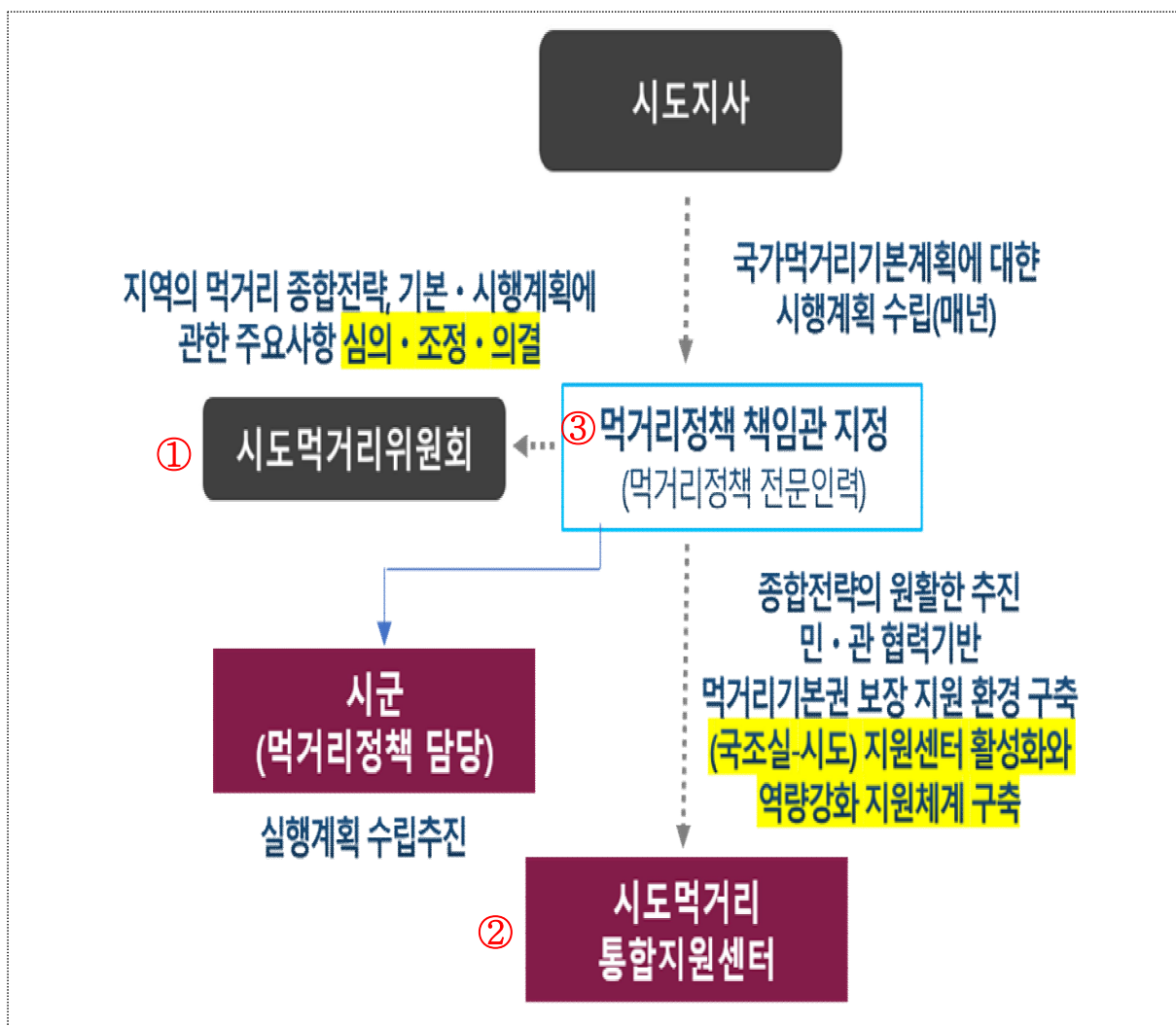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9) 제24조(시·도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① 시·도먹거리위원회, ② 시·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③ 먹거리정책책임관⁴⁰⁾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에 따른 시·도 조직 체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40) 먹거리정책책임관 등에 관하여는 “사. 국가먹거리위원회, 사무국, 먹거리정책책임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에서 함께 논의하였음.

최근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현재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있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⁴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요]

- 목적 : 지역 농산물의 기획생산·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및 제6항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지원
- 지원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저온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

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대시설 등 지원(부지매입·운영비 제외)을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

* 1년차: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 지원대상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2,400백만원(40%), 지방비 3,600백만원(60%)
- ☐ 지원현황 : '22년부터 3개 지자체(강원 화천, 경기 안성, 전북 전주) 지원

구분	'22년	'23년		'24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1년차
지자체	강원 화천군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 ☐ 사업시행주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 예산현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b)	증 감	
				(b-a)	%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9,860	10,431	7,490	△2,941	△28.1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300	2,400	2,400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따라서 동 제도의 근거 규정을 현행과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두지, 혹은 제정안에 신설할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차. 먹거리 종합정보의 관리와 국내외 협력

제정안 제28조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연구·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8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9조(실태조사·교육·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
2. 국민의 먹거리 접근권
3. 국민의 먹거리 원인 질병
4. 기타 국민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항

④ 실태조사의 항목, 보고서의 작성과 발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 제28조와 관련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⁴²⁾에 식품산업

42)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의 조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입법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⁴³⁾·제7조⁴⁴⁾에, 제정안 제30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⁴⁵⁾에, 제정안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⁴⁶⁾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3)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4)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45)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46)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세청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⁴⁷⁾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함.

그러나 제정안 제28조제3항⁴⁸⁾은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에 자료의 요구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료제공 요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검토의견

제정안 제28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 의무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

47)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후략>

48) 제28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음.

이는 국민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하도록 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28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음.

즉,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⁴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고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한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9)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카. 보칙 및 부칙

제정안 제31조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32조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 등을 감독하고 그 내용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3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감독과 보고)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 직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 등이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활동 및 업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감독하고 그 감독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2조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이행 계획 및 심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② 해양수산부

안 제32조의 경우 감독의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부처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의견

2) 검토의견

제정안 제31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권한위임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업무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또한, 제정안 제3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기타 참여단체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먹거리통합위원회에 설치한 직제⁵⁰⁾의 장이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활동 및 업무가 발생하였는지 감독하고 그 내용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

50) 제정안 제22조(사무국 및 추진 직제의 설치 등) ① 대통령은 위원회에 종합전략과 기본계획을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합동 정책회의를 주관하며, 이 법에 의한 감독과 보고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및 기타의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는 직제를 설치한다.

고하도록 하였음.

이는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32조는 모든 관련 기관을 감독 대상으로 두면서 감독의 구체적인 절차 및 권한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않고 있는바, 관련 부처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33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바, 포상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하위법령 등의 제정 및 관련 사업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